

# 감사결과보고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 -

2023. 8.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II.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 .....	2
III. 감사결과 .....	9
□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9
(1) 위원장 등 상임위원 및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주의·통보) .....	10
(2)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경고·주의) .....	17
(3)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문책) .....	41
(4) 지각·조퇴·외출 제도 운영 부적정(주의·통보) .....	49
(5) 대외직무 활동비 및 안전검토비 등 수당지급 부적정(주의) .....	52
(6)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주의) .....	55
(7) 유급휴일·휴가 운영 및 기념품비 등 집행 부적정(주의) .....	58
(8) 사업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	62
(9)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주의·통보) .....	64
(10) 지역사무소 근무 직원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급 부적정(주의) .....	68
(11) 조사연구과제 입찰공고 등 부적정(주의) .....	71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배경 및 목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라 예산 전액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 국고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이에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 연간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방심위의 보조사업 계획 수립부터 보조금 결정 및 교부, 사업수행과 정산까지 국고 보조금 집행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 확인 및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데 감사중점을 두었다.

## 3. 감사실시 과정

감사실시에 앞서 방심위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언론보도와 국회 논의사항,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후 사전 수집·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3. 7. 3.부터 7. 21.까지 15일 간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하고, 7. 26.부터 8. 4.까지 8일 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는 등 총 23일 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방심위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23. 8. 9.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sup>1)</sup>

### 1. 설치 목적 및 연혁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2008. 2. 29. 구 방송위원회 심의기능과 구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같은 해 5. 14. 출범하였다.

### 2. 조직 현황

방심위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sup>2)</sup>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기 방심위는 2021. 8. 9. 출범하였고, 위원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제5기 방심위 위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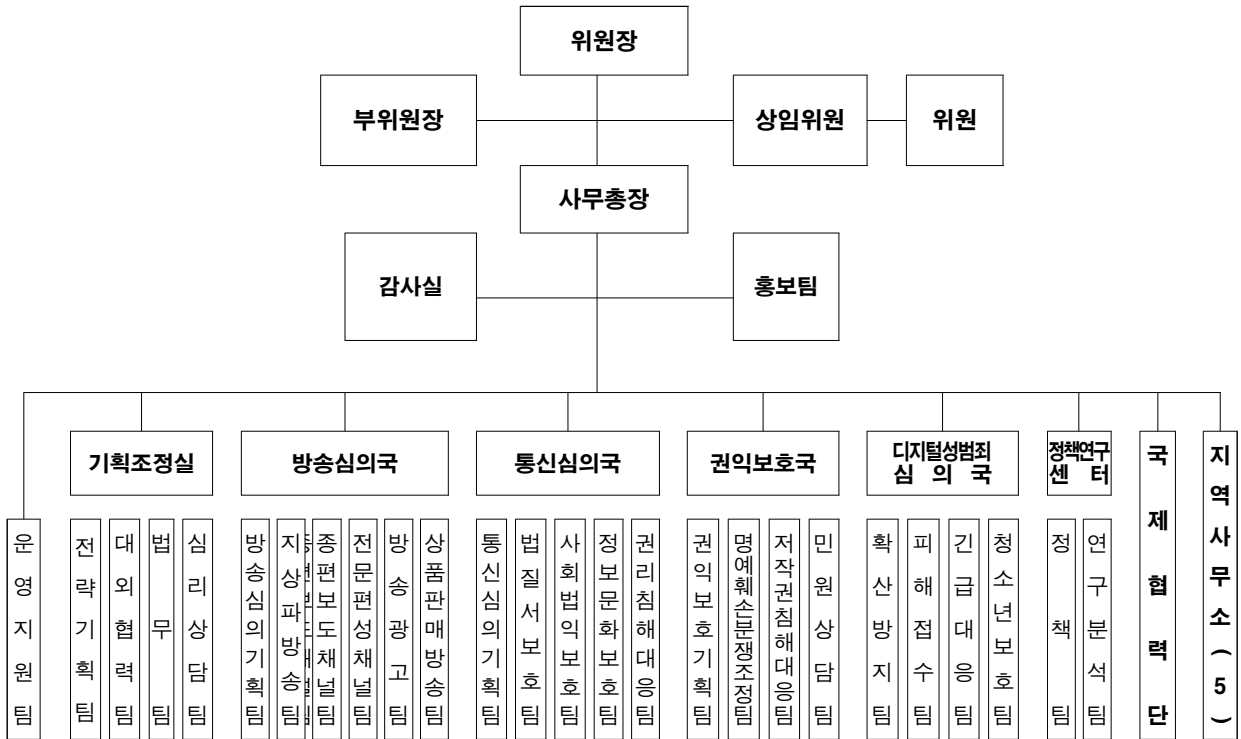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추 천	위촉기간
위원장	정연주	· 건양대 총장,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통령	'21.7.23. ~ '24.7.22.
부위원장	이광복	· 연합뉴스 논설주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회의장	'21.7.23. ~ '24.7.22.
상임위원	황성욱	·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의장	'21.7.23. ~ '24.7.22.
위원	옥시찬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춘천 MBC 기획심의실장, 보도국장	대통령	'21.7.23. ~ '24.7.22.
위원	허연희	· iMBC 대표이사, 부산 MBC 대표이사 사장	국회 상임위	'22.4.12. ~ '24.8.5.
위원	김우석	·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국회 상임위	'21.8.6. ~ '24.8.5.
위원	윤성욱	·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장	국회 상임위	'21.7.23. ~ '24.7.22.
위원	김유진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	대통령	'21.7.23. ~ '24.7.22.
위원	정민영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의장	'21.7.23. ~ '24.7.22.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 2)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교섭단체 대표의원외 협의), 국회 소관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으로 선출

방심위 사무처는 [그림 1]과 같이 사무총장의 총괄 하에 본부(2실, 4국, 1센터, 1단, 27팀) 및 5개의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방심위 조직도(2023년 6월 말 기준)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사무처의 정원은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사무총장 이하 201명(계약직 60명 별도)이고, 임직원의 급여수준<sup>3)</sup>은 [표 2]와 같다.

[표 2] 임원 및 직원 평균연봉

(단위 : 만 원)

구분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사무총장	직원		
				일반직	계약직	전체
2023년 평균연봉	19,061	18,075	16,263	6,350	3,080	5,562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3)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2022년 평균연봉은 각각 1억 8,743만 원과 1억 7,773만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의 평균연봉(2022년 기준 기관장 1억 8,538만 원, 이사 1억 5,453만 원)보다 많고, 일반직 직원의 평균연봉은 6,200만 원으로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연봉(7,037만 원)보다 적음

### 3. 예산 현황

방심위의 2023년 예산은 [표 3]과 같이 총 368억 2천 4백만 원으로 전액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표 3] 2023년 방심위 예산

(단위 : 백만 원)

수 입		지 출	
내 역	예산액	내 역	예산액
계	36,824	계	36,824
1. 국가보조금(방송통신발전기금)	36,824	1. 운영비	25,4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6,824	- 인건비	20,217
		- 경상비	5,194
		2. 사업비	11,413
		- 방송심의 활동	7,958
		- 통신심의 활동	3,455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4. 주요업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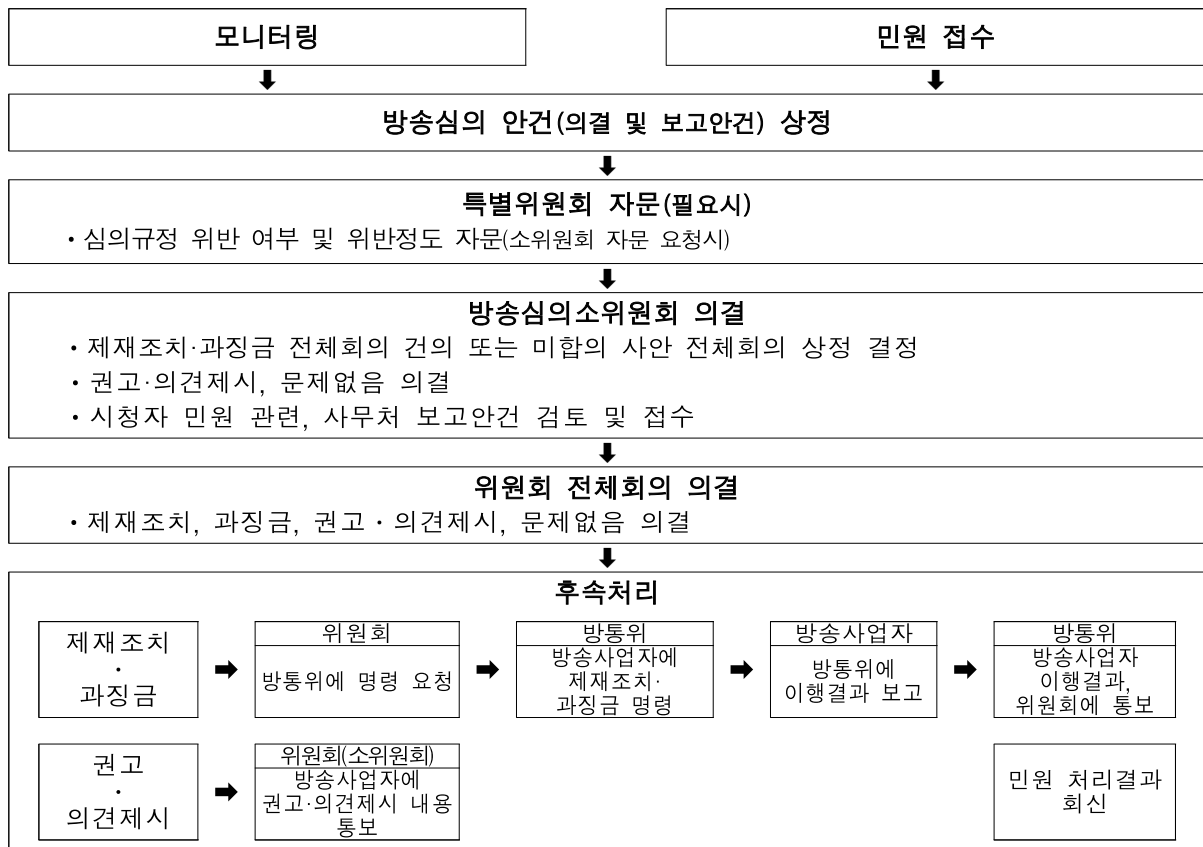
방심위의 직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가. 방송심의

방심위는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송·중계유선방송 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의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등에 따라 해당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 또는 의견제시를 하거나, 제재조치의 종류를 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방심위의 방송심의와 관련된 주요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방송심의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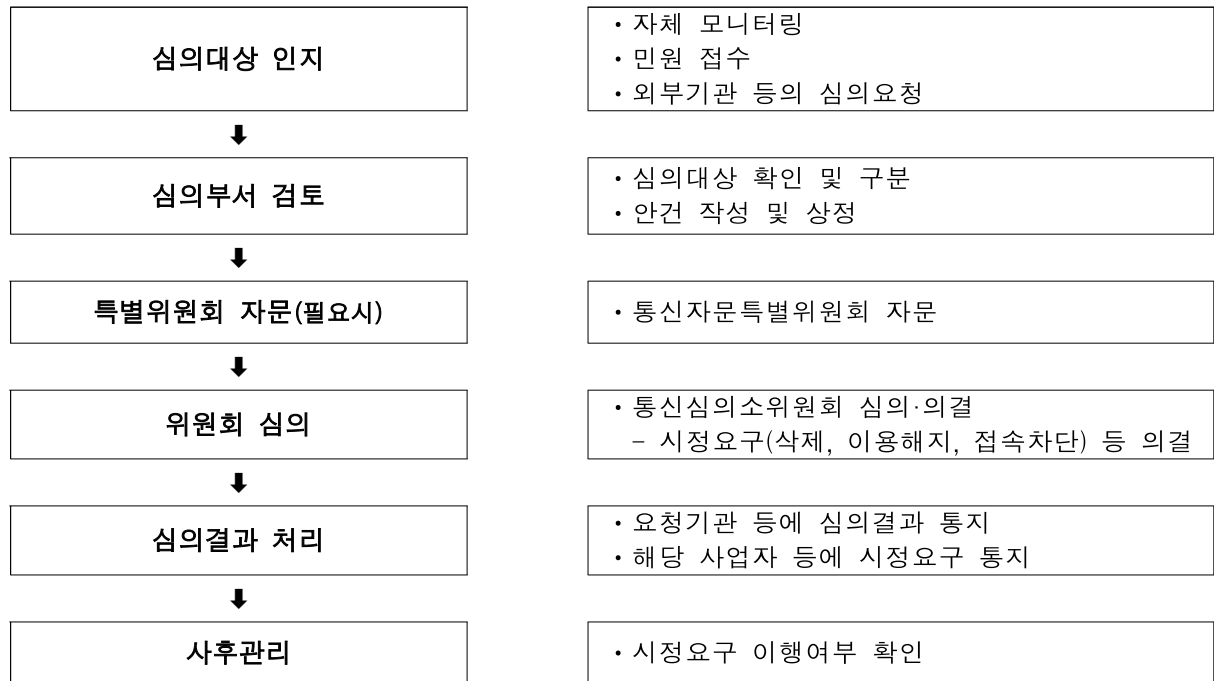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나. 통신심의

방심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등에 규정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을 심의하여,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시정요구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방심위의 통신심의와 관련된 주요절차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통신심의 절차도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다. 방송·통신 모니터

방심위는 방송 및 통신 심의대상을 인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방송·통신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다.

방심위의 방송·통신 모니터는 방심위가 선발한 모니터요원을 통해 수행된다. 방심위는 방송 또는 통신분야에 대해 각각 6개월 이내의 모니터링 위임계약을 통해 연 2회 모니터요원을 선발하며, 방송 모니터요원이 지상파TV, 종편보도 채널, 상품판매방송 등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방심위에 제출하고, 통신 모니터요원이 인터넷 등에서 불법·유해정보 유통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제출하는데, 방심위는 2023년 현재 [표 4]와 같이 6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30명 규모의 방송·통신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다.



[표 4] 방송·통신 모니터 운영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방송 모니터	예산	4,346	4,820	4,662	5,035	5,289	5,555
	인원	458	458	430	458	458	458
	심의상정건수	655	721	630	353	535	191
통신 모니터	예산	700	1,047	1,084	798	838	880
	인원	90	103	100	72	72	72
	심의상정건수	29,684	48,393	71,914	29,896	55,612	26,448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라. 방송·통신 민원 심의 및 처리

방심위는 방송 및 통신심의 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심의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현재 방심위의 민원처리 기한에 관한 기준은 없으나, 방심위는 통상적으로 민원접수 후 30일이 지나면 민원인에게 1차 연장을 통보하고 60일이 지나면 2차 연장을 통보하고 있다.

방송심의 민원의 경우 이태원 참사, 코로나19 방역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있어 사실과 다른 방송 내용,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적 패널 구성, 아동 성 추행·자살 장면 등 자극적 소재의 예능·드라마 등에 대한 시청자 등의 심의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78,084건이 접수되어 71,462건이 처리되었고, 2023년 6월 말 현재 6,622건이 처리 중에 있다.

방심위가 최근 5년간 2차 연장 통보(접수 후 60일 경과) 전에 방송심의 민원을 처리한 비율은 2018년 54.4%, 2019년 42.4%, 2020년 33.9%, 2021년 13.2%, 2022년 22.3%, 2023년 12.4%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한편, 통신심의 민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233,236건이 접수되어 1,220,567건이 처리되었고, 2023년 6월 말 현재 12,669건이 처리 중에 있다.

방심위가 최근 5년간 2차 연장 통보(접수 후 60일 경과) 전에 통신심의 민원을 처리한 비율은 2018년 60.2%, 2019년 71.1%, 2020년 85.7%, 2021년 51.4%, 2022년 88.9%, 2023년 87.2%로 5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5] 방송 및 통신심의 관련 민원처리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말	
방송심의 민원	총 접수 계	10,497(100%)	11,343(100%)	27,467(100%)	14,483(100%)	9,847(100%)	4,447(100%)	
	처리완료	30일 이내	2,060(19.6%)	1,958(17.3%)	2,822(10.3%)	1,276(8.8%)	979(9.9%)	332(7.5%)
		30일 경과	3,649(34.8%)	2,847(25.1%)	6,472(23.6%)	642(4.4%)	1,224(12.4%)	218(4.9%)
		60일 경과	4,711(44.9%)	5,689(50.2%)	18,036(65.7%)	10,456(72.3%)	2,591(26.3%)	1,641(36.9%)
		180일 경과	28(0.3%)	41(0.4%)	107(0.3%)	2,103(14.5%)	725(7.4%)	1(0%)
		1년 경과	48(0.5%)	795(7%)	7(0%)	4(0%)	-	-
		계	10,496(100%)	11,330(99.9%)	27,444(99.9%)	14,481(100%)	5,519(56%)	2,192(49.3%)
	처리 중	30일 이내	-	-	-	-	-	469(10.5%)
		30일 경과	-	-	-	-	-	557(12.5%)
		60일 경과	-	-	-	-	-	1,229(27.7%)
		180일 경과	-	-	-	-	4,321(43.9%)	-
		1년 경과	1(0%)	13(0.1%)	23(0.1%)	2(0%)	7(0.1%)	-
		계	1(0%)	13(0.1%)	23(0.1%)	2(0%)	4,328(44%)	2,255(50.7%)
통신심의 민원	총 접수 계	190,090(100%)	148,483(100%)	311,889(100%)	286,250(100%)	191,432(100%)	105,092(100%)	
	처리완료	30일 이내	94,466(49.7%)	82,605(55.6%)	240,846(77.2%)	127,641(44.6%)	130,852(68.4%)	74,679(71.1%)
		30일 경과	20,052(10.5%)	23,021(15.5%)	26,576(8.5%)	19,573(6.8%)	39,383(20.5%)	16,943(16.1%)
		60일 경과	68,325(35.9%)	37,710(25.5%)	36,110(11.6%)	91,913(32.1%)	20,209(10.6%)	1,645(1.5%)
		180일 경과	6,422(3.4%)	4,819(3.2%)	7,448(2.4%)	46,811(16.4%)	573(0.3%)	2(0%)
		1년 경과	485(0.3%)	297(0.2%)	866(0.3%)	280(0.1%)	15(0%)	-
		계	189,750(99.8%)	148,452(100%)	311,846(100%)	286,218(100%)	191,032(99.8%)	93,269(88.7%)
	처리 중	30일 이내	-	-	-	-	-	9,726(9.3%)
		30일 경과	-	-	-	-	-	1,939(1.8%)
		60일 경과	-	-	-	-	-	158(0.2%)
		180일 경과	-	-	-	-	384(0.2%)	-
		1년 경과	340(0.2%)	31(0%)	43(0%)	32(0%)	16(0%)	-
		계	340(0.2%)	31(0%)	43(0%)	32(0%)	400(0.2%)	11,823(11.3%)

주: 경과기간 계산의 경우 처리완료 건은 접수일시와 처리일시의 차이, 처리 중인 건은 접수일시와 기준시점('23. 6. 30.)의 차이로 계산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Ⅲ. 감사결과

---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별첨

# 방송통신위원회

## 주의요구·통보

제 목 위원장 등 상임위원 및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용

### 1. 위원장·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복무관리 방안 미비

#### 가. 업무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6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심의위원 간 호선을 통해 선출하고 있다.

#### 나.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방심위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복무를 규율할 법령상 기준이 없고,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되어 상임위원 개인의 복무를 관리·감독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방통위법」 제28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운영 예산 전액을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sup>1)</sup>받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1) 방심위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단위: 백만 원)	31,676	33,672	34,667	36,221	36,139	36,824

또한 방심위는 「방통위법」 제21조 등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위반사항 심의 등 공적 정책 결정·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 「방송법」에 따라 제재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수시로 협업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방심위 상임위원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방심위가 국고보조금 등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고 공공정책의 결정·집행 및 정부 부처와의 수시협업을 수행함에 따라 직무수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적 기관임을 고려할 때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복무기준 등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2)</sup>

#### 다. 감사결과 확인된 사실

그런데 방심위는 사무처 직원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취업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등 복무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3인의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4조 등을 통해 위원에게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일반적 책무만을 부여할 뿐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3인의 복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 까지 위원장 등 상임위원 3인의 전용차량 운행기록에서 휴가 및 출장인 경우,

---

2)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 “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원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직원의 인사·복무기준에 준하여 근무시간을 설정하는 등 최소한의 공통 복무규범을 마련하도록 조치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및 출퇴근 시 외부일정 등으로 방심위 및 자택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방심위와 자택 간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만을 추출하여 점검한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 모두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시 이전에 퇴근한 경우가 전체 출근일의 과반이고(위원장·부위원장 65%, 상임위원 73%), 부위원장의 경우 9시 이후 출근한 경우가 전체 출근일의 72%를 차지하는 등 [표]와 같이 9시 이후에 출근하거나 18시 이전에 퇴근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표] 위원장 등 상임위원 출퇴근 현황(2021년 8월~2023년 5월)

1. 출근

구분	출근일수 (A)	차량 출근일수	9시 이후 출근일수					9시 이후 출근비율(B/A)	
			계(B)	09:01~ 09:30	09:31~ 10:00	10:01~ 10:30	10:31~ 11:00		
위원장	'21년(8~12월)	95	95	4	1	1	2	-	4.2%
	'22년(1~12월)	221	213	10	2	6	1	1	4.5%
	'23년(1~5월)	98	98	64	61	3	-	-	65.3%
	소계	414	406	78	64	10	3	1	18.8%
부위원장	'21년(8~12월)	96	95	55	50	5	-	-	57.3%
	'22년(1~12월)	217	211	169	119	50	-	-	77.9%
	'23년(1~5월)	98	98	73	61	12	-	-	74.5%
	소계	411	404	297	230	67	-	-	72.3%
상임위원	'21년(8~12월)	78	78	-	-	-	-	-	-
	'22년(1~12월)	217	217	4	1	-	3	-	1.8%
	'23년(1~5월)	101	101	-	-	-	-	-	-
	소계	396	396	4	1	-	3	-	1.0%

2. 퇴근

구분	출근일수 (A)	차량 퇴근일수	18시 이전 퇴근일수				18시 이전 퇴근비율(B/A)		
			계(B)	17:59~ 17:30	17:29~ 17:00	16:59~ 16:30		16:29~ 16:00	
위원장	'21년(8~12월)	95	94	64	36	23	-	5	67.4%
	'22년(1~12월)	221	193	135	14	102	10	9	61.1%
	'23년(1~5월)	98	98	71	26	42	2	1	72.4%
	소계	414	385	270	76	167	12	15	65.2%
부위원장	'21년(8~12월)	96	86	79	11	68	-	-	82.3%
	'22년(1~12월)	217	155	125	9	116	-	-	57.6%
	'23년(1~5월)	98	72	63	27	36	-	-	64.3%
	소계	411	313	267	47	220	-	-	65.0%
상임위원	'21년(8~12월)	78	75	53	43	10	-	-	67.9%
	'22년(1~12월)	217	209	158	155	2	-	1	72.8%
	'23년(1~5월)	101	97	77	76	-	1	-	76.2%
	소계	396	381	288	274	12	1	1	72.7%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2. 유연근무제 직원의 복무관리 부적정

### 가. 업무 개요

방심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취업세칙」 제18조에 따라 근무시간 등을 변경,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 나.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방심위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등에 따르면 2023. 4. 3.부터<sup>3)</sup> 시차출퇴근제<sup>4)</sup>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원(이하 “유연근무제 직원”이라 한다)은 출근 및 퇴근 기록 등을 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취업세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방심위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방심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8조 등에 따라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휴가보상수당 등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sup>5)</sup>

따라서 유연근무제 직원이 출퇴근 기록을 출입관리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휴가보상수당 등의 보수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유연근무제 직원이 출퇴근 기록을 출입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방심위 회계검사 기간 동안 2023. 4. 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유연근무제 직원 총 92명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을 출입관리시스템에 제대로

3) 2019. 9. 30. 제정된 위 지침에는 기본 근무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제 직원의 경우 퇴근 기록을 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23. 4. 3.부터 출퇴근 기록 모두를 예외 없이 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2023. 3. 23. 지침 개정

4)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직원이 출근시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근무제도(방심위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2조)

5)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최대 3일치의 휴가보상수당을 직원에게 지급

입력하였는지 점검한 결과 ㉠팀 A가 8차례(근무일 기준)에 걸쳐 출퇴근 중 한번만 그 기록을 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별표] “출근 또는 퇴근 기록 입력을 누락한 유연근무제 직원 명세”와 같이 총 35명의 직원이 66차례에 걸쳐 출퇴근 중 한번만 기록을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을 입력하지 않은 유연근무제 직원이 근로시간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유연근무제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와 휴가보상수당 등 보수의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 ① 위원장 등 상임위원에 대한 근무시간 등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유연근무제 직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위배하여 출근 및 퇴근 기록 등을 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출근 또는 퇴근 기록 입력을 누락한 유연근무제 직원 명세

연번	부서	직급	성명	출입일시	직원별 미입력 횟수 합계
1	㉠팀	○○급	A	2023-04-05 07:25:58	8회
2				2023-04-12 07:14:55	
3				2023-04-18 06:56:50	
4				2023-04-28 07:22:20	
5				2023-05-04 06:32:39	
6				2023-05-11 07:14:03	
7				2023-06-23 07:25:53	
8				2023-06-27 07:22:35	
9	○○팀	○○급	○○○	2023-04-10 09:17:32	6회
10				2023-04-28 09:24:58	
11				2023-05-16 09:23:42	
12				2023-05-17 09:20:16	
13				2023-05-22 09:17:51	
14	2023-05-24 09:26:19				
15	○○팀	○○급	○○○	2023-04-10 08:20:45	4회
16				2023-04-19 08:21:33	
17				2023-05-11 08:18:26	
18				2023-06-01 08:18:36	
19	○○팀	○○급	○○○	2023-04-03 15:45:04	3회
20				2023-04-06 07:55:47	
21				2023-04-28 06:58:30	
22	○○팀	○○급	○○○	2023-04-14 07:22:40	3회
23				2023-04-17 09:22:09	
24				2023-04-21 07:15:01	
25	○○팀	○○급	○○○	2023-06-02 08:16:06	3회
26				2023-06-09 08:12:24	
27				2023-06-30 08:13:02	
28	○○팀	○○급	○○○	2023-04-13 08:49:38	2회
29				2023-04-17 07:55:26	
30	○○팀	○○급	○○○	2023-04-11 06:29:27	2회
31				2023-05-08 06:35:42	
32	○○팀	○○급	○○○	2023-04-13 16:34:14	2회
33				2023-04-26 07:25:15	

연번	부서	직급	성명	출입일시	직원별 미입력 횟수 합계
34	○○팀	○○급	○○○	2023-04-27 09:24:00	2회
35				2023-05-11 09:13:42	
36	○○팀	○○급	○○○	2023-04-03 08:22:59	2회
37				2023-05-10 13:16:35	
38	○○팀	○○급	○○○	2023-04-27 07:56:37	2회
39				2023-05-15 07:51:00	
40	○○팀	○○급	○○○	2023-06-23 07:51:55	2회
41				2023-06-30 07:53:28	
42	○○팀	○○급	○○○	2023-05-24 08:04:23	2회
43				2023-06-15 07:59:06	
44	○○팀	○○급	○○○	2023-04-11 09:23:36	2회
45				2023-05-02 09:18:35	
46	○○팀	○○급	○○○	2023-04-13 08:02:25	2회
47				2023-04-24 07:56:00	
48	○○팀	○○급	○○○	2023-05-04 08:22:55	1회
49	○○팀	○○급	○○○	2023-04-25 07:50:13	1회
50	○○팀	○○급	○○○	2023-06-23 09:27:59	1회
51	○○팀	○○급	○○○	2023-04-17 09:15:08	1회
52	○○팀	○○급	○○○	2023-04-06 07:50:35	1회
53	○○팀	○○급	○○○	2023-05-18 07:42:01	1회
54	○○팀	○○급	○○○	2023-04-11 07:09:36	1회
55	○○팀	○○급	○○○	2023-05-17 08:16:46	1회
56	○○팀	○○급	○○○	2023-04-21 08:00:13	1회
57	○○팀	○○급	○○○	2023-04-21 07:52:22	1회
58	○○팀	○○급	○○○	2023-05-17 07:53:28	1회
59	○○팀	○○급	○○○	2023-06-02 07:25:07	1회
60	○○팀	○○급	○○○	2023-04-12 07:18:47	1회
61	○○팀	○○급	○○○	2023-05-08 07:57:10	1회
62	○○팀	○○급	○○○	2023-06-14 08:29:00	1회
63	○○팀	○○급	○○○	2023-05-23 07:41:42	1회
64	○○팀	○○급	○○○	2023-05-31 08:00:33	1회
65	○○팀	○○급	○○○	2023-06-13 07:43:08	1회
66	○○팀	○○급	○○○	2023-05-03 08:23:45	1회

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창립기념일, 워크숍, 체육대회 및 직원별  
휴가출장재택근무일 등 제외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 경고·주의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기 관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표 1]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기관업무비(240-02)-관서업무수행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표 1] 업무추진비(관서업무수행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위원장	예산	36,0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집행	31,205	28,792	26,340	11,968	19,897	12,329
부위원장	예산	20,400	16,200	16,200	16,200	16,200	16,200
	집행	18,696	16,184	16,167	8,054	15,591	5,539
상임위원	예산	20,400	16,200	16,200	16,200	16,200	16,200
	집행	18,656	16,193	11,017	7,393	16,174	5,336
사무총장	예산	18,000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집행	17,921	14,391	14,399	14,395	14,393	5,910

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1. 8. 9. 출범, 2023년도 집행액은 2023. 5. 31.까지임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위 법률 제18조 제1항 및 「2021~202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sup>1)</sup>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의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sup>2)</sup>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위 법률 제8조 제1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21~2023년 예산집행지침」(방심위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그 사용 용도를 명확히

1) 「2021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방송기반총괄과-39호, 2021. 1. 12.), 「2022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방송기반총괄과-34호, 2022. 1. 6.), 「2023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방송기반총괄과-41호, 2023. 1. 10.)

2) 위 법 제2조 제3호 나호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은 공직자에 포함되고, 위 법 제2조 제1호 라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가 포함되어 있어 방심위도 이에 해당함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집행 시 기준 단가는 1인당 3만 원을 한도액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 불가피한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심위 위원장 등 임원들은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단가 기준과 시기 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와 그 근거가 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등을 작성하는 비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3.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적립 및 사용한 후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방심위 위원장 B의 ㉠실장으로 재직하였던(2021. 8. 9.~2022. 2. 13.) C는 B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카드 3장 중 1장을 소지하면서 B가 업무추진비로 직원들과 식사를 한 음식점 등에 자신이 소지한 B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B의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보좌하였다.

C는 B가 2021. 8. 25.부터 2022. 1. 11.까지 업무추진비(관서업무수행경비)를 집행하는 동안 [별표 1]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결제하고 집행한 명세”와 같이 ㉠㉠(9회) 및 ㉠나(2회)에서 11회에 걸쳐 계 1,372,000원을 음식점에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적립된 선수금을 이용하여 당일 또는 다른 날의 식대를 지불하였다.

#### 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의 위반에 대비하여 선수금 적립

B는 C 등과 함께 3명이 2021. 8. 25. 음식점 ㉠㉠에서 69,000원어치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C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117,000원을 결제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적립된 선수금에서 식대 69,000원을 지불하고 잔액 48,000원을 본인 명의

로 위 음식점에 적립하였다.

또한 B는 2021. 9. 9. ㉠㉠에서 미상 인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동석자 중 누군가가 식대를 결제하였는데도 C는 위 식대 명목으로 115,000원을 결제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하였다.

위 사례들을 포함하여 C는 B가 2021. 8. 25.부터 2022. 1. 11. 사이에 점심식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실제 식대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후 차액을 선수금으로 적립([별표 1] 연번 1, 6, 10번)하거나, 동석자가 결제하여 결제할 필요가 없는데도 별도로 결제([별표 1] 연번 4, 7번)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하는 등 향후 B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코로나19 방역지침의 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거나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단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5회에 걸쳐 계 347,000원을 지출 원인 없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하였다.<sup>3)</sup>

#### 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을 숨기기 위해 선수금 사용 등

B는 2021. 8. 31.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인원제한 기준(5인 이상 모임금지)을 위반하여 본인 포함 7명이 ㉠㉠에서 133,000원어치 점심식사<sup>4)</sup>를 하였는데, C는 B 대신 업무추진비 카드로 점심식사의 식대를 결제하면서 음식점에서 4인분을 초과하는 식대를 한꺼번에 결제해 주려고 하지 않자 117,000원을 결제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적립된 선수금[165,000원 = 48,000원(8. 25. 적립) + 117,000원(8. 31. 적립)]에서 식대를 69,000원 및 64,000원으로 분할하여 지불하였다.

3) 실제 식대와 결제금액이 같거나([별표 1] 연번 3번) 실제 식대보다 작은 금액을 결제(적립된 선수금으로 차액 결제([별표 1] 연번 2, 5, 8, 9, 11번)할 때에도 먼저 선수금으로 결제한 후 선수금에서 식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4) B 등 3명은 룸에서 69,000원(23,000원 × 3인분)어치 음식을 주문하고, C 등 4명은 홀에서 64,000원(16,000원 × 4인분)어치 음식을 주문하였음

또한 B는 같은 해 12. 20.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인원제한 기준(5인 이상 모임 금지)을 위반하여 본인 포함 5명이 ㉠㉡에서 95,000원어치 점심식사<sup>5)</sup>를 하였는데, C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104,000원을 결제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적립된 선수금에서 24,000원 및 71,000원으로 분할하여 결제<sup>6)</sup>하기도 하였다.

위 사례들을 포함하여 B는 2021. 8. 25.부터 2022. 1. 11. 사이에 점심 식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표 2]와 [별표 1](연번 2, 5, 10, 11번)과 같이 4회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인원제한 기준을 위반하였고, C는 그때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선수금을 사용하여 분할결제하는 등 방법으로 식대를 결제하였다.

[표 2] 코로나19 방역지침의 모임 인원제한 기준 위반 명세

(단위: 원)

연번	수도권 인원제한 기준		업무추진비 집행				
	기간	모임 인원기준 (18시 이전)	결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집행금액	
						총액	결제방법
1	2021. 8. 23. ~ 2021. 9. 5.	5인 이상 금지	2021. 8. 31. 12:50	㉠㉡	위원장 등 7인	133,000	1차: 69,000 2차: 64,000
2	2021. 9. 6. ~ 2021. 10. 3.	접종 미완료자 최대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인 가능	2021. 9. 15. 12:55	㉠㉡	위원장 등 8인	184,000	1차: 92,000 2차: 92,000
3	2021. 12. 18. ~ 2022. 1. 16.	5인 이상 금지	2021. 12. 20. 12:41 및 12:42	㉠㉡	위원장 등 5인	95,000	1차: 24,000 2차: 71,000
4			2022. 1. 11. 13:02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B는 2021. 11. 24. 본인 포함 4명이 ㉠㉡에서 158,000원어치 점심식사<sup>7)</sup>를 함으로써 1인당 집행단가(39,500원/인=총 식대 158,000원÷4명)가 업무추진비 기준 상한액(30,000원/인)을 초과하였는데, C는 1인당 집행단가를 기준 상한액 이하

5) B 등 3명은 룸에서 41,000원(13,000원 × 2인분, 15,000원 × 1인분)어치 음식을 주문하고, C 등 2명은 홀에서 54,000원(27,000원 × 2인분)어치 음식을 주문하였음

6) 차액 9,000원[104,000원 - 95,000원(24,000원+71,000원)]을 선수금으로 적립하였음

7) B 등 4명은 룸에서 80,000원(20,000원 × 4인분)어치 음식을 주문하고, 그 외 78,000원(39,000원 × 2인분)어치 간편식을 별도로 구매하였음

로 낮추기 위해 업무추진비 카드로 116,000원(1인당 집행단가 29,000원/인=총 식대 116,000원÷4명)을 결제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차액 42,000원을 미리 적립해 놓았던 선수금에서 같은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였다.

위 사례 포함하여 B는 2회([별표 1] 연번 8, 9번)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점심 식사를 할 때 1인당 집행단가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였고, C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사례와 동일한 방법으로 1인당 집행단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제한 후 부족한 금액을 미리 적립해 놓았던 선수금을 이용해 지불하였다.

#### 다.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위 “가항”의 사례와 같이 B는 본인을 포함한 3명이 2021. 8. 25. ㉠㉠에서 69,000원어치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C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117,000원을 결제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적립된 선수금에서 식대 69,000원을 지불하고 잔액 48,000원을 본인 명의로 위 음식점에 적립하였다.

그리고 C는 같은 날 위 음식점으로부터 117,000원짜리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복귀하여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비서 D에게 위 영수증을 건네주면서, 참석인원을 ‘통신소위 참여 비상임 위원 등 4인’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 주었다.

그 후 위 “나항”의 사례와 같이 B가 같은 해 8. 31. 본인을 포함한 7명이 위 음식점에서 133,000원어치 점심식사를 하였을 때, C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로 117,000원을 결제하고 차액 16,000원은 미리 적립해 놓았던 선수금에서 지불하였다. 그리고 C는 같은 날 위 음식점으로부터 117,000원짜리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복귀하여 D에게 위 영수증을



건네주면서, 참석인원을 ‘광고소위 참여 비상임 위원 등 4인’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D는 2021. 9. 15. 위 2건에 대하여 C가 알려 준 대로 각각 4명이 117,000원씩 집행한 것으로 ‘8월 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팀에 제출하였고, ㉠팀장 E는 같은 해 9. 17. D가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위 사례들을 포함하여 B가 2021. 8. 25.부터 2022. 1. 11. 사이에 점심 식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C는 10회(11회 중 [별표 1] 연번 3번<sup>8)</sup> 제외)에 걸쳐 실제 식대와 다른 영수증을 발급받아 D에게 건네주거나, 8회([별표 1] 연번 4, 7, 8번 제외<sup>9)</sup>)에 걸쳐 참석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D에게 알려주는 등 총 1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이나 참석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D에게 알려 주었고, D는 2021. 9. 15. 등 5회에 걸쳐 C가 알려 준 대로 ‘월별 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팀에 제출함으로써, ㉠팀장 E는 같은 해 9. 17. 등 5회에 걸쳐 D가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B는 당시 C가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사용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D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보고받지 못하여 C가 D에게 참석인원 등 집행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어 업무추진

8) 5명이 식사를 하고 115,000원을 선수금으로 결제한 후 선수금에서 69,000원 및 46,000원으로 분할하여 지불한 후 115,000원짜리 영수증을 발급받아 영수증의 금액과 실제 식대는 같음

9) 연번 4, 7번은 동석자가 결제하여 음식 주문인원 등 실제 참석인원이 확인되지 아니 하고, 연번 8번은 참석인원과 사용내역서의 인원은 동일함

비 사용내역서 및 지출결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B는 당시 자신과 일행은 룸에서 식사를 하고 수행원들은 홀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홀에서 몇 명이 식사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단가기준을 위반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와 D는 B에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B의 진술과 배치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인원제한 기준을 위반한 사항의 경우 비록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반 사실은 인정되며, 업무추진비의 1인당 집행단가 기준을 위반한 사항의 경우 수행원들도 식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수행원들의 식대를 고려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B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B가 업무추진비 집행의 주체로서 모임에 직접 참석하여 참석 인원수와 식사 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방심위 지침으로 규정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단가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에 방역지침상 인원제한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실장이나 비서 등에게도 이를 확인하여 관련 기준 등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 주체로서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 4.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 기준 단가를 위반한 후 사실과 다른 지출결의서 작성 가. 위원장 B의 경우

위원장 B는 2021. 11. 19. 및 2023. 2. 15.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하여 음식점 ㉠㉡에서 각각 4명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1인당 집행단가(35,000원/인=총 식대 140,000원÷4명 및 37,000원/인=총 식대 148,000÷4명)가 업무추진비 기준 상한액(30,000원/인)을 초과한 금액을 직접 결제하는 등 [별표 2]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단가 상한액 초과 집행 명세 - 1. 위원장”과 같이 2021. 9. 28.부터 2023. 4. 13.까지 총 1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1인당 집행단가가 업무추진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위원장 비서 D는 위 13건 중 4건은 B로부터, 9건<sup>10)</sup>은 ㉢실장이나 수행 비서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1인당 집행단가 상한액을 준수한 것처럼 참석인원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여 2021. 10. 15. 등 1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팀에 제출하였고, ㉣팀은 2021. 10. 18. 등 11회에 걸쳐 D가 작성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지출결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데 대하여, B는 자신이 직접 결제한 4건의 경우 ‘자신이 D에게 참석 인원수를 알려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D는 ‘위원장이 알려주는 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호 진술이 배치되고 있다.

#### 나. 부위원장 F의 경우

부위원장 F는 2023. 4. 27.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하여 음식점 ㉠㉡에서 4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1인당 집행단가(37,500원/인=총 식대 150,000원÷4명)가 업무추진비 기준 상한액(30,000원/인)을 초과한 금액을 직접

---

10) ㉢실장이나 수행비서가 결제한 9건의 경우 ㉢실장, 수행비서가 1인당 집행단가 상한액을 준수한 것처럼 참석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줌

결제하는 등 [별표 2]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단가 상한액 초과 집행 명세 - 2. 부위원장”과 같이 2021. 11. 24.부터 2023. 4. 27.까지 총 9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1인당 집행단가가 업무추진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부위원장 전직 비서 G와 현직 비서 H는 위 9건에 대해 F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1인당 집행단가 상한액을 준수한 것처럼 참석인원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여 2021. 12. 3. 등 6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한 후 ㉠팀에 제출하였고, ㉠팀은 2021. 12. 15. 등 6회에 걸쳐 G와 H가 작성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지출결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데 대하여, F는 ‘자신이 비서들에게 참석 인원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G(8건)는 자신이 참석인원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H(1건)는 부위원장이 알려주는 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호 진술이 배치되고 있다.

#### 다. 상임위원 I의 경우

상임위원 I는 2021. 8. 13.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하여 음식점 ㉠㉡에서 3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1인당 집행단가(40,000원/인=총 식대 120,000원÷3명)가 업무추진비 기준 상한액(30,000원/인)을 초과한 금액을 직접 결제하는 등 [별표 2]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단가 상한액 초과 집행 명세 - 3. 상임위원”과 같이 2021. 8. 13.부터 2023. 5. 12.까지 총 24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1인당 집행단가가 업무추진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상임위원 전직 비서 J와 현직 비서 K는 위 24건에 대해 I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1인당 집행단가 상한액을 준수한 것처럼 참석인원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여 2021. 9. 13. 등 15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한 후 ㉠팀에 제출하였고, ㉠팀은 2021. 9. 17. 등 15회에 걸쳐 J와 K가 작성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지출결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데 대하여, I는 ‘자신이 비서들에게 참석 인원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J(5건)는 자신이 참석인원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K(19건)는 상임위원이 알려주는 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호 진술이 배치되고 있다.

#### 라. 사무총장 L의 경우

사무총장 L은 2021. 11. 26. 및 2022. 3. 7.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하여 음식점 ㉠㉠ 및 ㉠㉠에서 각각 3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1인당 집행단가(37,666원/인=총 식대 113,000원÷3명 및 40,000원/인=총 식대 120,000원÷3명)가 업무추진비 기준 상한액(30,000원/인)을 초과한 금액을 직접 결제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1인당 집행단가가 업무추진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사무총장 비서 M는 위 2건에 대해 L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1인당 집행단가 상한액을 준수한 것처럼 참석인원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여 2021. 12. 2. 및 2022. 4. 4.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팀에 제출하였고, ㉠팀은 2021. 12. 15. 및 2022. 4. 11. M이 작성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지출결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데 대하여, L은 ‘자신이 M에게 참석 인원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M은 ‘사무총장이 알려주는 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호 진술이 배치되고 있다.

위 “가항” 내지 “라항”과 같이 사실과 다른 지출결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 원장 B, 부위원장 F, 상임위원 I, 사무총장 L은 자신들의 비서가 작성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에 ‘참석 인원수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비서에게 참석 인원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비서들 중 4명은 위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상호 진술이 배치되어 위 사람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4명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주체로서 모임에 직접 참석하여 참석 인원수와 식사 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방심위 지침으로 규정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단가에 맞게 집행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 주체로서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방심위의 고위직인 자신들이 반복적으로 1인당 업무추진비 집행단가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후 아무런 지시 없이 비서들에게 참석 인원 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비서들이 1인당 업무추진비 집행단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의 참석인원 등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4명이 사실과 다른 지출결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 5. 점심시간 주류 구매 및 근무시간 미준수

### 가. 점심시간 주류 구매

기획재정부의 매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방심위의 매 연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경우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주류구매를 지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부위원장 F는 2022. 1. 12. ㉔지원단 직원들과 4명이 음식점 ㉕㉖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낙지연포탕(대)과 소주 5병, 막걸리 1병을 마시는 등 [별표 3] “업무추진비로 점심시간에 주류를 구매한 명세”와 같이 2022. 1. 12.부터 2023. 4. 27.까지 10회에 걸쳐 직원들과 공식행사 등이 아닌 단순 점심식사를 하면서 4명이 식사하는 경우 적게는 소주 2병, 많게는 소주 7병과 맥주 2병을 마시는 등 과도하게 주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F는 음주 사실은 인정하고,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음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는 기획재정부 및 방심위의 예산집행지침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해 참석한 직원들이 오후 근무시간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었을 우려가 있다.

### 나. 점심시간 미준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취업세칙」 제17조에는 직원의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3시로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등 임원들이 직원 격려 등 목적으로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 직원들의 근무에 주는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심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점심시간을 과도하게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3시 30분 이후 음식점 결제 사례를 확인한 결과, 위원장 B, 부위원장 F, 사무총장 L은 2021. 12. 21.<sup>11)</sup>부터 2023. 5. 31.까지 내부직원 격려 등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면서 [표 3] 및 [별표 4] “13:30 이후 업무추진비 결제 명세”와 같이 위원장은 총 4회(금액: 576천 원), 부위원장은 총 33회(금액: 4,813천 원), 사무총장은 총 23회(금액: 2,654천 원)를 13:30 이후에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13:30 이후 업무추진비 결제 현황(21. 12. 31.~23. 5. 31.)**

(단위: 천 원)

구분	합계		13:30~14:00		14:00~14:30		14:30~15:00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위원장	4회	576	4회	576	-	-	-	-
부위원장	33회	4,813	29회	4,086	2회	195	2회	532
사무총장	23회	2,654	23회	2,654	-	-	-	-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원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직원 18명<sup>12)</sup>, 부위원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직원 145명, 사무총장과 점심식사를 한 직원 85명 중 상당수는 13:30 이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점심시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원장 B는 ‘기관장이 직원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업무관련 간담회였고, 위 자료로는 법인카드 결제 시각만 알 수 있고 점심 식사 시작 시간은 알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점심시간 미준수를

11) 2021. 12. 21.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 시차제를 운영하여 점심 범위에서 제외

12)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각 본인을 제외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상 집행인원을 기준으로 함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직원들과의 간담회는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점심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하면서까지 외부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방심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취업세칙」 제17조에는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3시로 규정되어 있는바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이후에 사무실로 복귀하였다면 이는 식사를 하기 위해 몇 시에 출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 ①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적립하여 집행하거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및 지출결의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B는 위 “3항”, “4항”, “5항”과 관련하여, 부위원장 F는 위 “4항”, “5항”과 관련하여, 상임위원 I는 위 “4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L은 위 “4항”, “5항”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데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조치하니 업무추진비 집행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경고)

[별표 1]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결제하고 집행한 명세

(단위: 원)

연번	일자	음식점	인원 (위원 장 포함)	실제 비용 (A)	결제 금액 (B)	차액 (C= B-A)	선수금[차액(C)] 관리			지출결의서	
							구분	잔액	사유	일자	사용 내역서 인원
1	2021 0825	☐가	3인	69,000	117,000	48,000	적립	48,000	모임 인원 제한 <sup>주1)</sup> 대비 적립	2021 0917	통신소위 참여 비상임 위원 등 4인
2	2021 0831	"	7인	133,000	117,000	-16,000	차감	32,000	제한 기준 초과 인원 차감	"	광고소위 참여 비상임 위원 등 4인
3 <sup>주2)</sup>	2021 0908	"	5인	115,000	115,000	0	-	32,000	분할 결제 (2인, 3인)	2021 1018	과반수 노조 집행부 등 4인
4	2021 0909	"	미 확인	0	115,000	115,000	적립	147,000	타인 결제 후 모임 인원 제한 대비 적립	"	○○실장 및 사무처 직원 등 4인
5	2021 0915	"	8인	184,000	116,000	-68,000	차감	79,000	제한 기준 초과 인원 차감	"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4인
6	2021 1101	"	3인	74,000	112,000	38,000	적립	117,000	모임 인원 제한 대비 적립	2021 1215	방송 분야 전문가 등 4인
7	2021 1104	"	미 확인	0	137,000	137,000	적립	254,000	타인 결제 후 모임 인원 제한 대비 적립	"	언론미디어 분야 학계 전문가 등 5인
8	2021 1124	"	4인	158,000	116,000	-42,000	차감	212,000	1인당 기준단가 초과 인원 차감	"	○○팀장 및 사무처 직원 등 4인
9	2021 1129	"	6인	234,000	203,000	-31,000	차감	181,000	"	"	○○실장 및 사무처 직원 등 7인
10	2021 1220	☐나	5인	95,000	104,000	9,000	적립	190,000	모임 인원 제한 대비 적립 및 인원 초과	2021 1231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4인
11	2022 0111	"	7인	151,000	120,000	-31,000	차감	159,000	제한 기준 초과 인원 차감	2022 0211	방송·광고소위 참여 비상임 위원 등 4인
합계 11건	· 실제 비용 합계 1,213,000원, 결제금액 합계 1,372,000원, 적립액 합계 347,000원, 집행잔액 159,000원 <sup>주3)</sup> · 모임 인원제한 위반 4회(연번 2, 5, 10, 11번), 단가 기준 위반 2회(연번 8, 9번)										

주: 1.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모임 인원제한 기준  
 2. 연번 3번은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같은 금액을 집행, 연번 4, 7번은 타인이 결제하여 참석인원 확인 안 됨  
 3. 집행잔액 159,000원은 C 등 수행원들이 2021. 12. 23. 및 2023. 11. 30. 각각 78,000원 및 69,000원 계  
 147,000원을 사용하고 최종 잔액은 12,000원임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단가 상한액 초과 집행 명세

1. 위원장

(단위: 원)

연번	사용자	일자	음식점명	실제 참석인원	결제금액	지출결의서	
						일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상 인원
1	위원장	2021 0928	○○	미확인	110,000	2021 1018	방송·언론 분야 전문가 등 4인
2	㉠팀 (○○실)	2021 1111	○○	4인	130,000	2021 1215	○○팀장 및 사무처 직원 등 5인
3	위원장	2021 1119	㉠㉡	4인	140,000	"	방송·언론 분야 학계 전문가 등 5인
4	위원장	2022 0210	○○	미확인	110,000	2022 0315	방송·미디어 분야 전문가 등 4인
5	㉠팀 (○○실)	2022 0216	㉠㉡	3인	105,000	"	㉠팀장 및 사무처 직원 등 4인
6	㉠팀 (○○실)	2022 0329	㉠㉡	4인	124,000	2022 0411	광고소위 참여 비상임 위원 등 5인
7	㉠팀 (○○실)	2022 0610	○○	3인	111,000	2022 0720	㉠팀(○○실) 직원 등 4인
8	㉠팀 (○○실)	2022 0726	㉠㉡	4인	124,000	2022 0812	방송·광고소위 참석 비상임위원 등 5인
9	㉠팀 (○○실)	2022 0818	㉠㉡	7인	212,000	2022 0919	부위원장·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 등 8인
10	㉠팀 (○○실)	2022 0906	㉠㉡	4인	126,000	2022 1020	방송·광고소위 참석 비상임위원 등 5인
11	위원장	2023 0215	㉠㉡	4인	148,000	2023 0322	미디어 분야 외부 전문가 5인
12	㉠팀 (○○실)	2023 0309	㉠㉡	3인	92,000	2023 0418	미디어 분야 외부 전문가 4인
13	㉠팀 (○○실)	2023 0413	㉠㉡	4인	128,000	2023 0522	미디어 분야 외부 전문가 등 5인
합계 13건		-	-	-	1,660,000	11회	-

주: 연번 1번과 4번은 영수증에 음식주문 인원이 없는 등 사유로 인원 미확인, 단, 점심은 1인당 4만 원 또는 5만 원짜리 정식 코스만 판매하고 있어 실제 참석인원은 2인 이하인 것으로 판단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등 재구성

## 2. 부위원장

(단위: 원)

연번	사용자	일자	음식점명	실제 참석인원	결제금액	지출결의서	
						일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상 인원
1	부위원장	2021 1124	○○	미확인	189,000	2021 1215	방송·언론 학계 전문가 등 7인
2	부위원장	2022 0303	○○	미확인	110,000	2022 0411	외부전문가 등 4인
3	부위원장	2022 0328	○○	미확인	240,000	"	언론사 관계자 등 8인
4	부위원장	2022 0427	가나	3인	99,000	2022 0516	○○팀장 등 4인
5	부위원장	2022 1005	가마	4인	161,000	2022 1122	외부전문가 등 9인
6	부위원장	2022 1027	○○	4인	130,000	"	○○국장 등 5인
7	부위원장	2022 1216	○○	3인	236,000	2022 1230	○○ 등 8인
8	부위원장	2022 1223	○○	6인	424,000	"	○○실 직원 등 15인
9	부위원장	2023 0427	가라	4인	150,000	2023 0522	○○팀장 등 5인
합계 9건		-	-	-	1,739,000	6회	-

주: 연번 1번, 2번, 3번은 영수증에 음식주문 인원이 없는 등 사유로 인원 미확인, 단, 1, 3번은 음식점에서 1인당 39,000원짜리 메뉴만 판매하고, 2번은 음식점에서 1인당 50,000원짜리 메뉴만 판매하였기 때문에 1인당 집행 단가 상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등 재구성

### 3. 상임위원

(단위: 원)

연번	사용자	일자	음식점명	실제 참석인원	결제금액	지출결의서	
						일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상 인원
1	상임위원	2021 0813	가나	3인	120,000	2021 0917	언론계 외부전문가 등 4인
2	상임위원	2021 0819	가가	3인	114,000	"	언론계 외부전문가 등 4인
3	상임위원	2021 1027	가가	2인	86,000	2021 1122	언론계 외부전문가 등 3인
4	상임위원	2021 1105	가가	2인	86,000	2021 1215	유관기관 전문가 등 3인
5	상임위원	2021 1202	가나	3인	158,000	2021 1231	유관기관 전문가 등 6인
6	상임위원	2022 0117	가가	2인	61,000	2022 0211	비상임 위원 등 3인
7	상임위원	2022 0218	가가	2인	82,000	2022 0315	방송 유관기관 관계자 등 3인
8	상임위원	2022 0223	가가	2인	98,000	"	비상임 위원 등 4인
9	상임위원	2022 0516	가가	3인	138,000	2022 0617	비상임 위원 등 5인
10	상임위원	2022 0620	가나	2인	96,000	2022 0720	○○팀장 등 4인
11	상임위원	2022 0629	가가	2인	98,000	"	비상임 위원 등 4인
12	상임위원	2022 0630	가나	2인	104,000	"	유관기관 전문가 등 4인
13	상임위원	2022 0706	가가	2인	92,500	2022 0812	○○팀장 등 4인
14	상임위원	2022 0707	가나	3인	152,000	"	○○팀장 등 6인
15	상임위원	2022 0712	○○	2인	123,000	"	㉠팀장 등 5인
16	상임위원	2022 0713	가가	2인	99,000	"	비상임 위원 등 4인
17	상임위원	2022 0722	가가	2인	117,000	"	○○팀장 등 4인
18	상임위원	2022 0727	○○	2인	223,000	"	방송 유관기관 관계자 등 8인
19	상임위원	2022 0826	가나	2인	98,500	2022 0919	○○국장 등 4인

연번	사용자	일자	음식점명	실제 참석인원	결제금액	지출결의서	
						일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상 인원
20	상임위원	2022 1014	○○	2인	217,000	2022 1122	유관기관 전문가 등 8인
21	상임위원	2022 1104	○○	3인	156,000	2022 1220	언론계 외부전문가 등 6인
22	상임위원	2023 0329	○○	3인	127,000	2023 0418	통신·언론 학계 전문가 등 5인
23	상임위원	2023 0426	○○	2인	127,000	2023 0522	유관기관 전문가 등 5인
24	상임위원	2023 0512	○○	2인	99,000	2023 0623	유관기관 관계자 등 4인
합계 24건		-	-	-	2,872,000	15회	-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업무추진비로 점심시간에 주류를 구매한 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일자	시간	음식점명	결제금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상 인원	음식 주문내역
1	2022-01-12	14:03	개배	100,000	배지원단장 등 4인	- 낙지연포탕(대) - 소주 5병, 막걸리 1병
2	2022-01-28	14:39	○○	180,000	배팀장 등 6인	- 찜정식 3인분 등 - 소주 8병
3	2022-02-15	13:55	○○	109,000	○○국장 등 4인	- 찜정식 3인분 등 - 소주 4병
4	2022-05-04	13:55	○○	100,000	○○팀장 등 4인	- 찜정식 2인분 등 - 소주 7병, 맥주 2병
5	2022-05-11	13:19	○○	101,000	○○팀장 등 4인	- 찜정식 3인분 등 - 소주 2병
6	2022-05-18	13:19	○○	201,000	○○팀장 등 7인	- 국수전골 7인분 - 소주 3병, 수입 맥주 1병
7	2022-10-27	12:58	○○	130,000	○○국장 등 5인	- 국수전골 4인분 - 수입 맥주 3병
8	2022-12-16	12:57	○○	236,000	○○ 등 8인	- 1++ 한우등심코스 3인분 - 수입 맥주 1병
9	2022-12-23	13:26	○○	424,000	○○실 직원 등 15인	- 1++ 한우등심코스 4인분 등 - 와인 1병, 소주 4병, 맥주 2병
10	2023-04-27	13:20	개배	150,000	○○팀장 등 5인	- 개배동 4인분 등 - 전통주 2병, 코르크차지(주류반입비)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4]

13:30 이후 업무추진비 결제 명세

1. 위원장

(단위: 원)

연번	카드 사용일	카드 사용시간	사용처	집행대상	사용금액
1	2022-04-13	13:37:10	○○	㉠팀장 등 2인	26,000
2	2022-12-01	13:41:03	○○	㉠팀장 및 사무처 직원 등 5인	123,000
3	2023-01-26	13:33:01	○○	○○팀장 및 사무처 직원 등 5인	150,000
4	2023-02-09	13:33:17	○○	○○팀장 및 사무처 직원 등 10인	277,400
합계(13:30~14:00)				4회	576,400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2. 부위원장

(단위: 원)

연번	카드 사용일	카드 사용시간	사용처	집행대상	사용금액
1	2021-12-27	13:47:38	○○	○○팀장 등 4인	120,000
2	2022-01-11	13:59:25	○○	○○국장 등 4인	104,000
3	2022-01-19	13:54:25	○○	○○장 등 6인	179,600
4	2022-01-20	13:47:04	○○	○○팀장 등 5인	138,000
5	2022-01-21	13:36:55	○○	○○실장 등 6인	157,000
6	2022-01-27	13:43:13	○○	㉠팀장 등 6인	180,000
7	2022-02-03	13:38:21	○○	○○국장 등 5인	131,000
8	2022-02-15	13:55:31	○○	○○국장 등 4인	109,000
9	2022-02-16	13:34:15	○○	○○국장 등 6인	172,000
10	2022-04-20	13:44:15	○○	○○국장 등 3인	81,000
11	2022-05-04	13:55:15	○○	○○팀장 등 4인	100,000
12	2022-05-17	13:39:44	○○	㉠팀장 등 8인	223,000
13	2022-05-19	13:31:13	○○	○○팀장 등 7인	187,000



연번	카드 사용일	카드 사용시간	사용처	집행대상	사용금액
14	2022-05-31	13:36:21	○○	○○팀장 등 5인	145,000
15	2022-08-19	13:42:06	○○	○○국장 등 4인	91,000
16	2022-08-23	13:33:15	○○	○○국장 등 6인	178,000
17	2022-09-28	13:41:12	○○	○○팀장 등 4인	105,000
18	2022-10-12	13:30:34	○○	○○국장 등 6인	84,000
19	2022-10-24	13:35:15	○○	○○국장 등 3인	61,500
20	2022-10-28	13:39:03	○○	○○국장 등 4인	100,000
21	2022-12-22	13:38:59	가라	○○국장 등 6인	160,000
22	2023-01-12	13:46:16	○○	㉠팀장 등 16인	470,000
23	2023-01-13	13:58:02	○○	○○팀장 등 3인	79,000
24	2023-01-17	13:37:17	○○	○○팀장 등 6인	171,000
25	2023-02-02	13:46:47	○○	○○국장 등 4인	100,000
26	2023-02-21	13:55:54	○○	㉠팀장 등 3인	88,000
27	2023-02-23	13:35:57	○○	○○팀장 등 7인	191,000
28	2023-03-09	13:30:13	○○	○○팀장 등 3인	79,000
29	2023-03-14	13:31:52	○○	○○국장 등 4인	102,000
소계(13:30~14:00)			29회		4,086,100
30	2022-01-12	14:03:31	가라	㉠지원단 등 4인	100,000
31	2022-03-31	14:09:42	○○	○○국장 등 4인	95,000
소계(14:00~14:30)			2회		195,000
32	2022-01-28	14:39:38	○○	㉠팀장 등 6인	180,000
33	2022-06-30	14:35:16	○○	○○팀장 등 12인	352,000
소계(14:30~15:00)			2회		532,000
총계			33회		4,813,100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3. 사무총장

(단위: 원)

연번	카드 사용일	카드 사용시간	사용처	집행대상	사용금액
1	2021-12-21	13:50:03	○○	○○센터 위원 등 4인	74,000
2	2021-12-28	13:31:36	○○	○○국장 등 3인	75,000
3	2022-01-11	13:37:31	○○	○○팀 직원 등 4인	98,000
4	2022-01-13	13:47:33	○○	○○팀 직원 등 3인	86,800
5	2022-02-11	13:40:24	○○	국장급 직원 등 4인	120,000
6	2022-03-23	13:31:32	○○	○○팀 직원 등 5인	150,000
7	2022-04-01	13:53:35	○○	○○국 직원 등 5인	150,000
8	2022-04-08	13:44:04	○○	○○실 직원 등 4인	120,000
9	2022-05-20	13:34:12	○○	○○실 직원 등 4인	86,100
10	2022-08-24	13:34:24	○○	○○팀 직원 등 6인	150,000
11	2022-09-15	13:40:59	○○	○○팀 직원, ○○위원 등 6인	150,000
12	2022-10-07	13:41:56	○○	○○팀 직원 등 6인	160,000
13	2022-10-18	13:33:36	○○	○○ 직원 등 3인	81,000
14	2022-11-17	13:34:39	○○	㉠팀 직원 등 3인	38,000
15	2022-12-01	13:30:18	○○	○○국 직원 등 3인	38,000
16	2022-12-21	13:32:32	○○	○○국 직원 등 6인	144,000
17	2023-01-05	13:31:03	○○	실국장 등 8인	205,000
18	2023-01-10	13:43:10	○○	○○팀 직원 등 6인	180,000
19	2023-02-06	13:49:45	○○	○○팀 직원 등 5인	119,500
20	2023-02-27	13:35:19	○○	○○팀장, ○○실 직원 등 5인	69,000
21	2023-02-28	13:49:06	○○	○○팀 직원 등 4인	92,000
22	2023-03-28	13:40:30	○○	사무처 직원 등 4인	115,600
23	2023-04-20	13:35:54	○○	○○팀, ○○실 직원 등 7인	152,100
합계(13:30~14:00)				23회	2,654,100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 문 책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  
기 관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 ㉠팀장 C는 2021. 8. 9.부터 2022. 2. 13.까지 방심위 위원장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원장 B가 2021. 8. 25.부터 2022. 1. 11.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동안 [별표]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결제하고 집행한 명세”와 같이 11회에 걸쳐 계 1,372,000원을 음식점에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적립된 선수금으로 식대를 지불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는 위원장 비서 D에게 참석인원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sup>1)</sup>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위 법률 제8조 제1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장 ㉡실장으로서 위원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대신 결제하거나 위원장 비서에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알려줄 때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1) 위 법 제2조 제3호 나호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은 공직자에 포함되고, 위 법 제2조 제1호 라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가 포함되어 있음

결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어 지출결의서가 허위로 작성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업무추진비 실제 집행액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등으로 선수금 적립

그런데 C는 B 등 3명이 2021. 8. 25. 음식점 ㉠㉠에서 69,000원어치 점심식사를 하였을 때 B 대신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면서, 선수금으로 117,000원을 결제하여 적립한 후 적립된 선수금에서 식대 69,000원을 지불하고 잔액 48,000원을 본인 명의로 위 음식점에 적립하였다.

또한 C는 B가 2021. 9. 9. ㉠㉠에서 미상 인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을 때 동석자 중 누군가가 식대를 결제하여 B는 결제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115,000원을 추가로 결제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C는 B가 2021. 8. 25.부터 2022. 1. 11. 사이에 점심식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11회 집행하는 동안 실제 식대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후 차액을 선수금으로 적립([별표] 연번 1, 6, 10번)하거나, 동석자가 결제하여 결제할 필요가 없는데도 별도로 결제([별표] 연번 4, 7번)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하는 등 향후 B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의 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거나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단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5회에 걸쳐 계 347,000원을 지출 원인 없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하였다.<sup>2)</sup>

## 2.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적립된 선수금 사용

C는 B 등 7명이 2021. 8. 31. ㉠㉠에서 133,000원어치 점심식사<sup>3)</sup>를 함으로써

---

2) 실제 식대와 결제금액이 같거나([별표] 연번 3번) 실제 식대보다 작은 금액을 결제(적립된 선수금으로 차액 결제([별표] 연번 2, 5, 8, 9, 11번)할 때에도 먼저 선수금으로 결제한 후 선수금에서 식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인원제한 기준(5인 이상 모임금지)을 위반하였을 때 B 대신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면서 음식점에서 4인분을 초과하는 식대를 한꺼번에 결제해 주려고 하지 않자 117,000원을 결제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적립된 선수금[165,000원 = 48,000원(8. 25. 적립) + 117,000원(8. 31. 적립)]에서 식대를 69,000원 및 64,000원으로 분할하여 지불하였다.

또한 C는 B 등 5명이 같은 해 12. 20. ㉠㉡에서 95,000원어치 점심식사<sup>4)</sup>를 함으로써 [표](연번 1번)와 같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인원제한 기준(5인 이상 모임금지)을 위반하였을 때 업무추진비 카드로 104,000원을 결제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적립된 선수금에서 24,000원 및 71,000원으로 분할하여 결제<sup>5)</sup>하기도 하였다.

**[표] 코로나19 방역지침의 모임 인원제한 기준 위반 명세**

(단위: 원)

연번	수도권 인원 제한 기준		업무추진비 집행				
	기간	모임 인원기준 (18시 이전)	결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집행금액	
						총액	결제방법
1	2021. 8. 23. ~ 2021. 9. 5.	5인 이상 금지	2021. 8. 31. 12:50	㉠㉡	위원장 등 7인	133,000	1차: 69,000 2차: 64,000
2	2021. 9. 6. ~ 2021. 10. 3.	접종 미완료자 최대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인 가능	2021. 9. 15. 12:55	㉠㉡	위원장 등 8인	184,000	1차: 92,000 2차: 92,000
3	2021. 12. 18. ~ 2022. 1. 16.	5인 이상 금지	2021. 12. 20. 12:41 및 12:42	㉠㉡	위원장 등 5인	95,000	1차: 24,000 2차: 71,000
4			2022. 1. 11. 13:02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이처럼 C는 B가 2021. 8. 25.부터 2022. 1. 11. 사이에 점심 식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위 [표] 및 [별표](연번 2, 5, 10, 11번)과 같이 4회에 걸쳐

3) B 등 3명은 룸에서 69,000원(23,000원 × 3인분)어치 음식을 주문하고, C 등 4명은 홀에서 64,000원(16,000원 × 4인분)어치 음식을 주문하였음  
 4) B 등 3명은 룸에서 41,000원(13,000원 × 2인분, 15,000원 × 1인분)어치 음식을 주문하고, C 등 2명은 홀에서 54,000원(27,000원 × 2인분)어치 음식을 주문하였음  
 5) 차액 9,000원[104,000원 - 95,000원(24,000원+71,000원)]을 선수금으로 적립하였음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인원제한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위반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선수금을 사용하여 분할결제 하는 등 방법으로 식대를 결제하였다.

또한 C는 B 등 4명이 2021. 11. 24. ㉠㉠에서 158,000원어치 점심식사<sup>6)</sup>를 함으로써 1인당 집행단가(39,500원/인=총 식대 158,000원÷4명)가 업무추진비 기준 상한액(30,000원/인)을 초과하였을 때 1인당 집행단가를 기준 상한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업무추진비 카드로 116,000원(1인당 집행단가 29,000원/인=총 식대 116,000원÷4명)을 결제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차액 42,000원을 미리 적립해 놓았던 선수금에서 같은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였다.

이처럼 C는 B가 2회([별표] 연번 8, 9번)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점심 식사를 하면서 1인당 집행단가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1인당 집행단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제한 후 부족한 금액은 미리 적립해 놓았던 선수금을 이용해 지불하였다.

### 3.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위 “1항”의 사례와 같이 C는 B 등 3명이 2021. 8. 25. ㉠㉠에서 69,000원어치 점심식사를 하였을 때 업무추진비 카드로 117,000원을 결제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적립된 선수금에서 식대 69,000원을 지불하고 잔액 48,000원을 본인 명의로 위 음식점에 적립하였다.

그리고 C는 같은 날 위 음식점으로부터 117,000원짜리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복귀하여 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D에게 위 영수증을 건네주면서 참석인원을 ‘통신소위 참여 비상임 위원 등 4인’이라고

---

6) B 등 4명은 룸에서 80,000원(20,000원 × 4인분)어치 음식을 주문하고, 그 외 78,000원(39,000원 × 2인분)어치 간편식을 별도로 구매하였음

사실과 다르게 알려 주었다.

그 후 위 “2항”의 사례와 같이 C는 B 등 7명이 같은 해 8. 31. 위 음식점에서 133,000원어치 점심식사를 하였을 때 업무추진비 카드로 117,000원을 결제하여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적립된 선수금[165,000원 = 48,000원(8. 25. 적립) + 117,000원(8. 31. 적립)]에서 식대를 분할하여 지불하였다.

그리고 C는 같은 날 위 음식점으로부터 117,000원짜리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복귀하여 D에게 위 영수증을 건네주면서, 참석인원을 ‘광고소위 참여 비상임 위원 등 4인’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D는 2021. 9. 15. 위 2건에 대하여 C가 알려 준 대로 각각 4명이 117,000원씩 집행한 것으로 ‘8월 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팀에 제출하였고, ㉠팀장 E는 같은 해 9. 17. D가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이처럼 C는 B가 2021. 8. 25.부터 2022. 1. 11. 사이에 점심 식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동안 10회(11회 중 [별표] 연번 3번<sup>7)</sup> 제외)에 걸쳐 실제 식사비용과 다른 영수증을 발급받아 D에게 건네주고, 8회([별표] 연번 4, 7, 8번 제외<sup>8)</sup>)에 걸쳐 D에게 참석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는 등 총 11회에 걸쳐 D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이나 참석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D는 2021. 9. 15. 등 5회에 걸쳐 C가 알려 준 대로 ‘월별 위원장

7) 5명이 식사를 하고 115,000원을 선수금으로 결제한 후 선수금에서 69,000원 및 46,000원으로 분할하여 지불한 후 115,000원짜리 영수증을 발급받아 영수증의 금액과 실제 식대는 같음

8) 연번 4, 7번은 동석자가 결제하여 음식 주문인원 등 실제 참석인원이 확인되지 아니 하고, 연번 8번은 참석인원과 사용내역서의 인원은 동일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팀에 제출하고, ㉠팀장 E는 같은 해 9. 17. 등 5회에 걸쳐 D가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C는 '위원장님과 동행자들, 수행원들까지 포함해 여럿이 식사할 때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제한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인데, 위원장님은 금액이 초과된 것은 없는지 묻거나 초과된 금액을 결제하라며 본인 개인 카드를 주신 적은 없어서 초과된 금액을 모두 본인의 사비로 결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 처리의 편의를 추구했던 실수를 범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C의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취업세칙」 제4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 제45조(징계) 제1호(법령 및 위원회 규칙·세칙·내규를 위반한 경우), 제3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제4호(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및 제5호(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위원장 ㉠실장으로서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등을 위반하여 결제금액을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적립된 선수금을 위원장 등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제한인원을 위반하거나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단가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집행하고, 위원장 비서에게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및 지출결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게 한 C를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 제45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문책)

[별표]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결제하고 집행한 명세

(단위: 원)

연번	일자	음식점	인원 (위원 장 포함)	실제 비용 (A)	결제 금액 (B)	차액 (C= B-A)	선수금[차액(C)] 관리			지출결의서	
							구분	잔액	사유	일자	사용 내역서 인원
1	2021 0825	☐☐	3인	69,000	117,000	48,000	적립	48,000	모임 인원 제한 <sup>주1)</sup> 대비 적립	2021 0917	통신소위 참여 비상임 위원 등 4인
2	2021 0831	"	7인	133,000	117,000	-16,000	차감	32,000	제한 기준 초과 인원 차감	"	광고소위 참여 비상임 위원 등 4인
3 <sup>주2)</sup>	2021 0908	"	5인	115,000	115,000	0	-	32,000	분할 결제 (2인, 3인)	2021 1018	과반수 노조 집행부 등 4인
4	2021 0909	"	미 확인	0	115,000	115,000	적립	147,000	타인 결제 후 모임 인원 제한 대비 적립	"	○○실장 및 사무처 직원 등 4인
5	2021 0915	"	8인	184,000	116,000	-68,000	차감	79,000	제한 기준 초과 인원 차감	"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4인
6	2021 1101	"	3인	74,000	112,000	38,000	적립	117,000	모임 인원 제한 대비 적립	2021 1215	방송 분야 전문가 등 4인
7	2021 1104	"	미 확인	0	137,000	137,000	적립	254,000	타인 결제 후 모임 인원 제한 대비 적립	"	언론미디어 분야 학계 전문가 등 5인
8	2021 1124	"	4인	158,000	116,000	-42,000	차감	212,000	1인당 기준단가 초과 인원 차감	"	○○팀장 및 사무처 직원 등 4인
9	2021 1129	"	6인	234,000	203,000	-31,000	차감	181,000	"	"	○○실장 및 사무처 직원 등 7인
10	2021 1220	☐☐	5인	95,000	104,000	9,000	적립	190,000	모임 인원 제한 대비 적립 및 인원 초과	2021 1231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4인
11	2022 0111	"	7인	151,000	120,000	-31,000	차감	159,000	제한 기준 초과 인원 차감	2022 0211	방송·광고소위 참여 비상임 위원 등 4인
합계 11건	· 실제 비용 합계 1,213,000원, 결제금액 합계 1,372,000원, 적립액 합계 347,000원, 집행잔액 159,000원 <sup>주3)</sup> · 모임 인원제한 위반 4회(연번 2, 5, 10, 11번), 단가 기준 위반 2회(연번 8, 9번)										

주: 1.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모임 인원제한 기준  
 2. 연번 3번은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같은 금액을 집행, 연번 4, 7번은 타인이 결제하여 참석인원 확인 안 됨  
 3. 집행잔액 159,000원은 C 등 수행원들이 2021. 12. 23. 및 2023. 11. 30. 각각 78,000원 및 69,000원 계  
 147,000원을 사용하고 최종 잔액은 12,000원임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 주의요구·통보

제 목 지각·조퇴·외출 제도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고, 방심위 직원들은 2023년도 상반기 중 [표]와 같이 연차휴가, 병가, 지각, 조퇴, 외출 등을 실시하였다.

[표] 연차휴가, 병가, 지각·조퇴·외출 등 현황(2023. 1. 1.~6. 3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인원	일수	인원	일수	인원	일수	인원	일수	인원	일수	인원	일수
연차휴가	182	302.94	180	333.25	186	313	163	258.38	165	289.69	186	331.44
병가	25	82	14	55	11	55	18	72	11	37	21	51
지각·조퇴·외출	확인 불가											

주: 1. 휴가가 복수의 월에 걸쳐 이어진 경우 월별 사용일수를 분할하여 각각 산입

2. 연차휴가 일수는 소숫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반일, 반반일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매 연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4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질

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sup>1)</sup>,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심위는 직원들의 지각·조퇴·외출 시간 누계가 연차휴가 또는 병가 일수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시스템 등에 직원들의 지각·조퇴·외출에 대한 신청 및 결재 기능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방심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취업세칙」 제27조 및 제29조에 연차휴가(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연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등), 병가(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 단 진단서 첨부시 미공제 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도, 위 취업세칙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직원이 지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부서장에게 미리 신고(불가피한 경우 사후 신고)하고,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각, 조퇴,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방심위는 업무지원시스템 안에 근태관리 기능을 구현하여 운영하면서, 초과근무·출장명령·휴가원<sup>2)</sup>에 대한 신청 및 결재 기능만 마련한 채 지각·조퇴·외출에 대하여는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결재 없이 부서장에게 구두로

1) 노동부 유권해석(근기 68207-157, 2000. 1. 22.)에 따르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음

2) 연차휴가, 공가, 대휴, 병가, 여성보건휴가, 청원휴가, 안식휴가, 자녀돌봄휴가, 포상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신고(지각)하거나 허가(조퇴, 외출)를 받는 방법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의 지각·조퇴·외출 시간 등을 기록하기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지각·조퇴·외출 누계 8시간이 연차휴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되어 연차휴가 또는 병가 일수에서 공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지각·조퇴·외출을 얼마나 실시하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취업세칙」 등에 지각·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는 규정을 마련하고(통보)
- ② 지각·조퇴 및 외출에 대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업무지원시스템 등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 주 의 요 구

제 목	대외직무 활동비 및 안전검토비 등 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9명의 위원 중 6명을 비상임위원으로 두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6명의 비상임위원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외직무 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방심위는 「방통위법」 제22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방심위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자문, 권익보호특별위원회 등 특정분야의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한 5개 특별위원회를 두고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특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sup>1)</sup>(이하 “집행지침”이라 한다) III. 비목별 지침 1-1. 일반수용비 차. 위원회 참석비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기술검토

1)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 따르면 동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심위는 매년 1월 위 법률, 재정 관련 지침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음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액 범위 내에서 자문료 또는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따라 방심위가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비상임 위원 또는 특별위원에게 회의참석 외의 자문료나 사례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각 비상임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회의참석 외에 자료수집·현지조사·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위원별 별도 용역 제공 횟수를 고려하여 건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방심위는 비상임위원 6명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는데도 매월 1인당 240만 원의 대외직무 활동비를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월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고, 특별위원에게도 [표 1]과 같이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마다 안전검토 및 자문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안전검토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월 1회 이상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일정액 (위원장 50만 원, 위원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표 1] 특별위원회 안전검토 및 자문사례비 지급 실태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원	안전검토 및 자문사례비 지급 방식
방송자문특별위원회	9명(위원장 1명, 위원 8명)	· 월단위 정액지급, 월 1~2회 개최 · 1회만 안전검토 의견서 제출하여도 전액 지급
광고자문특별위원회	9명(위원장 1명, 위원 8명)	· 월단위 정액지급, 월 2회 개최 · 1회만 안전검토 의견서 제출하여도 전액 지급
방송언어특별위원회	9명(위원장 1명, 위원 8명)	· 월단위 정액지급, 월 2회 개최 · 안전검토 의견서 제출없이 토론내용을 회의록에 기재
통신자문특별위원회	9명(위원장 1명, 위원 8명)	· 월단위 정액지급, 월 1회 개최 · 미참석의 경우 안전검토 의견서 제출시 지급
권익보호특별위원회	9명(위원장 1명, 위원 8명)	· 월단위 정액지급, 월 1회 개최 · 미참석의 경우 안전검토 의견서 제출시 지급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방심위는 [표 2]와 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상임위원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채 총 7억 4,152만 원의 대외직무 활동비를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지급하였고, 특별위원에게 안전검토 의견에 대한 제출 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총 7억 7,819만 원의 안전검토 및 자문사례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였다.

**[표 2] 대외직무활동비, 안전검토 및 자문사례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대외직무 활동비	예산액	158,400	172,800	172,800	172,800	172,800	849,600
	집행액	146,052	167,440	173,032	90,271	164,720	741,515
안전검토 및 자문사례비	예산액	174,000	175,200	171,564	178,764	168,780	868,308
	집행액	109,300	157,900	170,579	173,013	167,400	778,192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별도의 용역제공 여부에 따라 비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에게 대외직무 활동비 또는 안전검토 및 자문사례비를 지급하도록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외직무활동비와 안전검토 및 자문사례비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 주 의 요 구

제 목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표 1]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 예산<sup>1)</sup>을 편성하여 퇴직금<sup>2)</sup> 용도로 적립하고 이를 재원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표 1] 방심위 퇴직급여충당금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퇴직급여 충당금	예산	1,154,479	1,153,693	1,362,777	1,374,298	1,391,709	예산: 인건비 총액의 1/12 <sup>주1)</sup>
	적립액	1,304,479	1,911,804	2,888,111	1,837,951	1,809,414	
	실보유(연말)	7,742,689	8,936,118	11,293,518	12,685,669	14,123,204	
	적립률 <sup>주2)</sup>	79%	85%	97%	100%	100%	
명예퇴직 수당	예산	-	-	-	-	-	집행 재원: 퇴직급여충당금
	집행액	138,364	266,584	-	-	-	

주: 1. 2018년도 및 2019년도의 경우 일반직은 각각 인건비 총액의 1/12의 90% 및 86.8% 편성

2. 퇴직급여 추계액(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 대비 적립률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1) 인건비 예산은 일반직과 기타직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일반직의 퇴직급여충당금 예산은 인건비 총액의 1/12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기타직의 퇴직급여충당금 예산은 보수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 함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매년 방심위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부여한 보조금 교부조건에도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방심위는 매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연도 보조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는 등 매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매 연도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인건비(110)[보수(110-01), 기타직 보수(110-02), 일용임금(110-04)] 중 보수(110-01)는 1. 연봉, 2. 가족수당, 3. 특수직수당, 4. 시간외근무수당, 5. 정액급식비, 6. 자녀학비보조수당, 7. 연가보상비, 8. 퇴직급여충당금, 9. 법정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명예퇴직수당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 인건비 예산 중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보조금으로 교부한 금원이므로 이를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금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방심위는 2018. 10. 4. 인사위원회에서 ㉠팀 N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해 10. 8. 위 사람에게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명예퇴직수당 141,284,330원을 지급하는 등 [표 2]와 같이 2018. 10. 8.부터 2019. 12. 6.까지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위 N 등 3명에게 명예퇴직수당 계 404,948,700원을 지급하였다.

[표 2] 명예퇴직 수당 지급 명세

(단위 : 원)

지급일자	지급 대상자		지급 산식	지급액
	소속	직·성명		
2018. 10. 8.	㉠팀	N	$(6,149,520\text{원} \times 1/4) \times [60\text{월} + (120\text{월} - 60\text{월}) / 2]$	138,364,200
2019. 1. 28.	㉡팀	O	$(6,211,180\text{원} \times 1/4) \times [60\text{월} + (120\text{월} - 60\text{월}) / 2]$	139,751,550
2019. 12. 6.	㉢팀	P	$(5,637,020\text{원} \times 1/4) \times [60\text{월} + (120\text{월} - 60\text{월}) / 2]$	126,832,950
합계	3명		-	404,948,700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앞으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교부받아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 주 의 요 구

제 목 유급휴일·휴가 운영 및 기념품비 등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취업세칙」(이하 “취업세칙”이라 한다) 및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각종 유급휴일 및 휴가를 운영하고,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창립기념일 및 근로자의 날 등에 직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

### 2. 유급휴일 및 휴가 운영 부적정

#### 가. 관계 규정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sup>1)</sup>(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

Ⅲ. 기금지출 지침 3. 휴가·연차유급휴직제도 등 운영에 따르면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운영하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는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방심위는 위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일이 아닌 창립기념일(5. 14.), 방송의 날(9. 3.)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

1)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 따르면 동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심위는 매년 1월 위 법률, 재정 관련 지침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음

규정」 제20조에 규정된 특별휴가 일수에 비해 본인 결혼은 3일, 배우자 사망은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은 2일을 더 인정하는 등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과다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안식휴가(10년 10일, 15년 5일, 20년 10일, 25년 5일 등)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유급휴일 추가 운영, 청원휴가 과다인정 및 안식휴가 운영으로 인해 [표 1]과 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억 7천만여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표 1] 유급휴일 추가운영 등에 따른 추가발생 인건비 추산액(2018년~2022년)

(단위: 천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유급휴일 추가운영	68,379	70,502	72,659	72,824	-	284,364
청원휴가 과다인정	4,331	2,298	5,239	2,807	3,752	18,427
안식휴가 운영	21,306	35,679	20,667	40,941	48,679	167,272
소계	96,034	110,498	100,585	118,593	54,453	470,063

주: 2022년 창립기념일(5. 14.) 및 방송의 날(9. 3.)은 방심위 유급주휴일인 토요일로 추가 인건비 미발생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3. 기념품비로 선불카드 등 집행 부적정

#### 가.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운영예산 전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sup>2)</sup>받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

2) 방심위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단위: 백만 원)	31,676	33,672	34,667	36,221	36,139	36,824

라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하 “공기업 예산운용지침”이라 한다)

Ⅱ. 주요항목별 지침 2. 경비 (2) 복리후생비에서는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지급하여 사실상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41조에서도 공공기관은 창립기념일,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고가의 기념품 또는 현금성 물품(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방심위는 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방심위가 운영예산 전액을 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고, 「방통위법」 제21조 등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위반사항 심의 등 공적정책 결정·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의 출처 및 업무 수행에 있어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니므로 정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기업 예산운용지침 및 공공기관 혁신지침 등을 준용하여 창립기념일 등에 고가의 물품 또는 현금성 물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방심위는 복리후생비로 기념품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창립기념일 및 근로자의 날에 위원장 이하 전 직원에게 선불형 기프트카드(10만 원) 1매를 기념품으로 지급<sup>3)</sup>하는 등 [표 2]와 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억 3,200만 원의 현

3) 방심위는 주거래 은행인 ㉠에서 10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선불형 기프트카드(신용카드처럼 사용 가능)를 구매하여 휴직자 및 국외교육 파견자 등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지급

금성 물품을 기념품으로 집행하였다.

**[표 2] 창립기념일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비 편성·집행 현황(2018년~2022년)**

(단위: 천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예산액	48,200	48,200	52,800	50,160	50,160	249,520
집행액	43,500	45,100	46,500	47,700	49,200	232,000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앞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기준과 다르게 유급휴일, 청원휴가 및 안식휴가를 운영 또는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금성 물품을 직원 기념품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념품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 주 의 요 구

제 목 사업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표 1]과 같이 사업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표 1] 사업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예산액	118,640	114,145	119,440	115,230	116,075	583,530
집행액	96,602	88,627	43,676	17,899	52,084	298,888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sup>1)</sup> III. 비목별 지침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240목) 중 사업추진비(240-1목)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는 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 따르면 동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심위는 매년 1월 위 법률, 재정 관련 지침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음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방심위는 매년 사업추진비(240-01목)의 내역사업으로 업무수행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방송 및 통신심의 관련 부서의 직원간담회 경비로 집행하는 등 [표 2]와 같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로 지출하여야 할 내부 직원 간담회 경비 총 61,915천 원을 사업추진비의 업무수행경비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표 2] 업무수행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예산액	12,000	12,000	14,400	14,400	16,800	69,600
집행액	11,857	11,152	12,919	11,612	14,375	61,915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사업추진비의 업무수행경비 예산을 관서 업무추진비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 주의요구·통보

제 목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표]와 같이 특근매식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표] 방심위 특근매식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액	69,994	72,754	67,766	53,078	51,341	48,539
집행액	60,309	45,863	45,235	52,155	45,364	18,550 <sup>주)</sup>

주: 2023년도 집행액은 6월 말까지 집행액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고 그 사실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 연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sup>1)</sup>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등<sup>2)</sup>에게 지급(7,000원/식·인 이내)하도록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방심위의 각 실·팀 등 30개 부서는 소속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근 음식점, 카페 등에 특근매식비 집행장부를 비치해 두고 직원들이 해당 음식점 등에서 식사 등을 한 후 장부에 기록하면 식사 등 비용을 일괄 결제하면서 특근 매식비 집행 장부에는 식사 등 집행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sup>3)</sup> 각 집행건들이 실제 특근매식비 집행 요건(근무개시 전·종료 후·휴일 2시간 이상 근무 등)을 갖추었는지 알 수 없는데도 집행시간 등 특근매식비 집행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특근매식비를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팀 등 30개 부서의 음식점 장부와 특근 대장 등을 통해 2023.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실제 특근매식비 집행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팀 직원 3명은 2023. 3. 3.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방심위 근처 음식점 ㉡㉢에서 각각 특근매식비로 4,500원, 3,000원, 2,000원 계 9,500원을

1)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 따르면 동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심위는 매년 1월 위 법률, 재정 관련 지침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음  
2)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  
3) 집행일자, 직원명, 집행금액만 기재

지출하는 등 [별표] “초과근무 없이 특근매식비로 집행한 명세(2023. 3. 1.~2023. 5. 31.)”와 같이 방심위 29개 부서<sup>4)</sup>는 2023.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매달 특근매식비 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 189~209명(중복 포함)이 3개월 동안 총 605회에 걸쳐 3,081,300원을 특근매식비 명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따라 ㉸팀 등 30개 부서에서 특근매식비 집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집행한 특근매식비를 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특근매식비 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들이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4) ㉸팀은 이용한 음식점 전산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위 기간 동안 확인하지 못하였음. 다만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2023. 6. 20.부터 같은 해 7. 25.까지 확인한 결과 특근을 하지 않은 직원들이 10회에 걸쳐 80,100원을 특근매식비 명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별표]

초과근무 없이 특근매식비로 집행한 명세(2023. 3. 1.~2023. 5. 31.)

(단위: 명, 원)

연번	부서명	3월		4월		5월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	○○실	5	26,500	4	20,500	9	35,800	18	82,800
2	○○단	2	19,000	2	13,000	2	23,500	6	55,500
3	○○팀	2	11,000	9	68,000	4	32,100	15	111,100
4	○○팀	9	37,700	4	19,500	6	31,900	19	89,100
5	○○팀	5	16,300	6	22,500	7	26,000	18	64,800
6	○○팀	-	-	-	-	1	8,000	1	8,000
7	○○팀	12	49,500	10	59,500	13	58,800	35	167,800
8	○○팀	2	22,100	1	9,100	-	-	3	31,200
9	○○팀	-	-	4	54,000	2	12,400	6	66,400
10	○○팀	1	12,000	-	-	-	-	1	12,000
11	○○팀	8	38,800	14	80,400	16	92,300	38	211,500
12	○○실	3	12,800	5	25,800	4	20,500	12	59,100
13	○○팀	6	31,200	1	3,000	-	-	7	34,200
14	○○팀	5	22,800	12	51,100	6	32,600	23	106,500
15	○○팀	3	15,000	4	20,500	4	47,500	11	83,000
16	㉠팀	5	34,300	-	-	4	30,000	9	64,300
17	㉡팀	4	60,300	2	18,000	-	-	6	78,300
18	○○팀	4	37,900	5	49,000	3	28,000	12	114,900
19	○○팀	6	23,000	9	46,500	6	16,000	21	85,500
20	○○팀	9	54,900	5	26,700	4	25,000	18	106,600
21	○○팀	5	26,300	4	20,800	5	26,100	14	73,200
22	○○팀	6	33,300	4	23,600	7	33,100	17	90,000
23	㉢팀	26	105,600	27	88,100	26	106,100	79	299,800
24	㉣팀	23	85,200	12	42,000	13	49,500	48	176,700
25	○○팀	9	47,000	9	30,500	14	78,300	32	155,800
26	○○팀	17	86,700	16	77,000	26	96,300	59	260,000
27	○○팀	7	30,000	7	31,800	11	37,200	25	99,000
28	○○팀	5	30,200	3	34,200	6	61,500	14	125,900
29	○○팀	18	54,000	10	50,500	10	63,800	38	168,300
30	㉤팀	이용한 음식점 전산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위 기간 중 확인 안 됨							
합계	29개 부서	207	1,023,400	189	985,600	209	1,072,300	605	3,081,300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 주 의 요 구

제 목 지역사무소 근무 직원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용도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원금보전형 자산<sup>1)</sup>으로 관리하면서 [표]와 같이 지역사무소 직원의 관사 임차보증금을 지원<sup>2)</sup>하고 있다.

[표] 지역사무소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지원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추가 지원)	9명 (2명)	10명	8명 (2명)	8명	11명
금액 (추가 지원)	370,000 (17,000)	415,000	380,000 (20,000)	380,000	450,000

주: 추가지원의 경우 연도 중 보증금 지원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기존 임차보증금 지원자에게 상향분을 지원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

1)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8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받은 임차보증금, 직원 전세보증금 등을 원금보존 형태로 보유하고 관리하는 자산

2) 지원한도: 2018. 5. 2. 이전: 3급 이상 4천만 원, 4급 이하 3천만 원, 2018. 5. 2. 이후: 3급 이상 5천만 원, 4급 이하 4천만 원, 2020. 4. 27. 이후: 3급 이상 6천만 원, 4급 이하 5천만 원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지역사무소 관사임차 및 관리 지침」(방심위 지침)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을 주택임차 이외의 목적에 유용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방심위는 2018. 5. 2. 「지역사무소 관사임차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임차보증금 지원한도를 3급 이상은 40,000천 원에서 50,000천 원으로, 4급 이하는 30,000천 원에서 40,000천 원으로 각각 10,000천 원씩 상향 조정하였다.

위 지침 등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을 주택임차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개정된 위 지침의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정된 지침은 2018. 5. 2.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침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완료한 직원에게 개정된 지원한도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상향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임대차계약 만료 등에 따라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는 지원받은 임차보증금 상향분을 그대로 개인계좌 등에 보관하게 되어 지원받은 금액을 임차보증금 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심위는 지침 개정으로 임차보증금 지원한도가 상향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에게 임차보증금 상향분을 적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임차보증금 지원금이 임차보증금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방심위는 2018. 5. 3. 기존 계약 관사의 경우 보증금 외 개인부담 보증금이 있는 경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사무소 관

사임차보증금 추가지원 및 2018년도 편성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5. 31.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만기일까지 각각 11개월, 23개월이 남아 있던 ㉞사무소 소장 Q과 차장 R으로부터 각각 보증금 5,000천 원과 12,000천 원을 추가지원 신청을 받아 같은 해 6. 15. 지급함으로써 위 사람들은 추가 지원금을 용도불명<sup>3)</sup>하게 사용<sup>4)</sup>하였다.

또한 방심위는 2020. 4. 27. 위 지침을 다시 개정하여 임차보증금 지원한도를 3급 이상은 50,000천 원에서 60,000천 원으로, 4급 이하는 40,000천 원에서 50,000천 원으로 각각 10,000천 원씩 상향 조정한 후 같은 해 5. 12. 「지역사무소 관사 임차보증금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5. 13.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만기일까지 각각 7개월, 10개월이 남아 있던 ㉟사무소 차장 S와 ㉞사무소 차장 T로부터 각각 보증금 10,000천 원을 추가지원 신청 받아 같은 날 지급함으로써 S는 추가 지원금을 계좌에 보관<sup>5)</sup>하였고, T는 용도불명하게 사용<sup>6)</sup>하였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임대차 계약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된 후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조정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임차보증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위 사람들이 추가 지원금 사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처를 알 수 없음

4)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각각 2019. 4. 19. 및 2020. 5. 11. 임차보증금 지원금을 전액 반납

5)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2021. 2. 3. 반납

6) 추가 지원금 사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처를 알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2021. 3. 19. 반납



# 방송통신위원회

## 주 의 요 구

제 목 조사연구과제 입찰공고 등 부적정

기 관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 중에서 [표]와 같이 방송통신심의 정책연구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정책연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표] 방심위 조사연구·정책연구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185,000	220,000	220,000	190,000	211,000
집행액	177,786	215,977	216,580	112,046	207,414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27호(2020. 2. 13. 시행) 등]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심위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부여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방심위는 2022. 5. 26. 추정가격 3,000만 원인 ‘○□조사’ 등 추정가격이 2,5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인 조사연구과제 7건을 방심위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연구과제 수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별표] “2천만 원 초과 조사연구과제 중 홈페이지 공고 후 계약 명세”와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조사연구과제 용역 16건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 아닌 방심위 홈페이지에 공고<sup>1)</sup>하여 조사연구과제 용역 수행자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2020년의 경우 6개 과제에 대한 1차 공모시 14개 업체에서 응모하여 5개 과제가 경쟁계약을 체결하고 1개 과제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에는 3개 과제에 대한 1차 공모시 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이 중 1개 과제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2년의 경우 7개 과제의 1차 공모에 4개 업체만 참여하는 등 3개 과제에서 미입찰이 발생하고 최종 5개 과제에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방심위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함으로써 경쟁입찰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1) 별도로 ㉔㉕ 등 7개 관련 학회에는 이메일로 공고 내용을 안내하였음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앞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조사연구과제에 대하여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공고 등 계약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2천만 원 초과 조사연구과제 중 홈페이지 공고 후 계약 명세

(단위: 천 원)

연번	연도	과제명	공모 결과 응모자 수			계약 일자	수행기관	계약 구분	추정 가격	계약 금액
			1차	2차	계					
1	'20	○○연구	1	1	2	'20. 4. 16.	-	경쟁	30,000	30,000
2		○○연구	2	공모 (×)	2	'20. 4. 17.	-	경쟁	25,000	25,000
3		○○연구	1	0	1	'20. 4. 17.	-	수의	25,000	25,000
4		○○연구	3	공모 (×)	3	'20. 4. 20.	-	경쟁	30,000	30,000
5		○○연구	5	공모 (×)	5	'20. 4. 21.	-	경쟁	30,000	30,000
6		○○연구	2	공모 (×)	2	'20. 4. 21.	-	경쟁	25,000	25,000
7	'21	○○조사	2	공모 (×)	2	'21. 9. 30.	-	경쟁	25,000	25,000
8		○○연구	5	공모 (×)	5	'21. 10. 1.	-	경쟁	30,000	30,000
9		○○조사	1	공모 (×)	1	'21. 10. 15.	-	수의	25,000	25,000
10	'22	○○연구	1	0	1	'22. 7. 27.	-	수의	25,000	25,000
11		○□조사	0	1	1	'22. 7. 27.	-	수의	30,000	30,000
12		○○연구	1	0	1	'22. 7. 27.	-	수의	30,000	30,000
13		○○연구	1	1	2	'22. 7. 27.	-	경쟁	25,000	25,000
14		○○연구	1	1	2	'22. 8. 2.	-	경쟁	30,000	30,000
15		○○연구	0	0	0	'22. 8. 2.	-	수의	30,000	30,000
16		○○연구	0	0	0	'22. 8. 2.	-	수의	25,000	25,000
합계	16개 과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 7개 과제 190,000천 원</li> <li>• 경쟁계약 9개 과제 250,000천 원</li> </ul>				

주: 1차 공모시 2인 이상 응모한 경우 재공모 미실시, 연번 9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